

[수정전]

I. 주요 경영현황 요약

1-1. 주요 경영지표

(단위 : 억원, %, %p)

구 분		당기 (23.3Q)	전년 동기 (22.3Q)	증 감
건전성	지급여력비율 (경과조치 전)		-	-
	지급여력비율 (경과조치 후)		-	-

- * 지급여력비율은 12월말 공시 예정임 (보험업감독규정 부칙 제3조)
- * 지급여력비율은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 수치만 산출 가능 (전 생·손보사 공통사항)
- * 주요변동요인 : 회계기준의 변경 (항목별 적용 회계기준 하단 참조)
- * 재무·손익 : 22.3Q IFRS17/IAS39 기준, 23.3Q IFRS17/9 기준
- * 운용자산이익률에서 A는 투자이익에 해당하며, B는 경과운용자산에 해당함
- * 운용자산이익률, 영업이익률 : 업무보고서 기준으로 작성
 - 22.3Q (21.3Q ~ 22.3Q) : IFRS4/IAS39 기준
 - 23.3Q (22.3Q ~ 23.3Q) : 23년은 IFRS17/9, 22년은 IFRS17/IAS39 적용
- * 총자산수익률(ROA), 자기자본수익률(ROE) : 22.3Q IFRS17/IAS39 기준, 23.3Q IFRS17/9 기준

IV. 자본의 적정성

4-2. 지급여력비율

- * 지급여력비율은 12월말 공시 예정임(보험업감독규정 부칙 제3조)

VI. 위험관리

- * K-ICS 관련 내용은 12월말 공시 예정임(보험업감독규정 부칙 제3조)

[수정후]

I. 주요 경영현황 요약

1-1. 주요 경영지표

(단위 : 억원, %, %p)

구 분		당기 (23.3Q)	전년 동기 (22.3Q)	증 감
건전성	지급여력비율 (경과조치 전)	214.5	-	-
	지급여력비율 (경과조치 후)	214.5	-	-

- * 지급여력비율은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 수치만 산출 가능 (전 생·손보사 공통사항)
- * 주요변동요인 : 회계기준의 변경 (항목별 적용 회계기준 하단 참조)
- * 재무·손익 : 22.3Q IFRS17/IAS39 기준, 23.3Q IFRS17/9 기준
- * 운용자산이익률에서 A는 투자이익에 해당하며, B는 경과운용자산에 해당함
- * 운용자산이익률, 영업이익률 : 업무보고서 기준으로 작성
 - 22.3Q (21.3Q ~ 22.3Q) : IFRS4/IAS39 기준
 - 23.3Q (22.3Q ~ 23.3Q) : 23년은 IFRS17/9, 22년은 IFRS17/IAS39 적용
- * 총자산수익률(ROA), 자기자본수익률(ROE) : 22.3Q IFRS17/IAS39 기준, 23.3Q IFRS17/9 기준

IV. 자본의 적정성

4-2. 지급여력비율

4-2-1. 지급여력비율 내용 및 산출방법 개요

지급여력비율은 지급여력금액과 지급여력기준금액의 비율로써 보험회사에 예상치 못한 손실 발생시에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건전성 지표입니다. 2023년부터 지급여력비율 산출기준은 RBC제도에서 신지급여력제도(K-ICS)로 변경되었습니다.

RBC와 K-ICS의 주된 차이는 보험부채 평가 기준이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변경되었으며, 요구자본의 측정 신뢰수준을 99%에서 99.5%로 상향하고, 위험계수 방식에서 충격시나리오 방식을 적용하는 등 경제 환경에 따른 위험을 보다 정교한 방법으로 위험을 측정 가능한 부분에 있습니다.

□ 산출방법 개요

K-ICS 제도는 보험회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량을 산출하여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 보유토록 하는 제도로 '지급여력금액'과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구성됩니다.

- 지급여력금액

보험회사에 예상치 못한 손실 발생 시 손실흡수에 사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에서 손실흡수성을 고려하여 일부 항목을 가감하여 산출합니다.

- 지급여력기준금액

지급여력기준금액은 향후 1년간 99.5% 신뢰수준 내에서 발생 가능한 요구자본을 의미하며, 기본 요구자본에서 법인세조정액을 차감한 후 기타요구자본을 가산하여 산출합니다. 기본요구자본은 생명·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시장, 신용, 운영위험액을 각각 구한 다음 상관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text{기본요구자본} = \sqrt{\sum_i \sum_j \text{상관계수}_{ij} \times \text{개별 위험액}_i \times \text{개별 위험액}_j} + \text{운영위험액}$$

- 상관계수_{ij}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생명·장기손해	일반손해	시장	신용
생명·장기손해	1	-	-	-
일반손해	0	1	-	-
시장	0.25	0.25	1	-
신용	0.25	0.25	0.25	1

[지급여력비율 총괄]

(단위: 억원, %)

구 분		당분기 (23.3Q)	당분기-1분기 (23.2Q)	당분기-2분기 (23.1Q)
경과 조치 전	지급여력비율	214.5	219.1	210.5
	지급여력금액	192,608	190,469	178,661
	지급여력기준금액	89,780	86,921	84,878
경과 조치 후	지급여력비율	214.5	219.1	210.5
	지급여력금액	192,608	190,469	178,661
	지급여력기준금액	89,780	86,921	84,878

* 2023년 3분기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214.5%로 전분기 대비 4.6%p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원인은 금융감독원의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실손보험 손해를 변경 및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가정 변경)입니다.

4-2-2. 지급여력비율의 경과조치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

2023년 지급여력제도의 변경(RBC→K-ICS)에 따라 급격한 지급여력비율 변동을 완화하고자 금융당국은 최대 2032년까지 K-ICS 기준 일부를 완화(이하 '경과조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과조치는 모든 회사에 공통 적용하는 조치와, 신고절차를 통해 회사가 선택 적용하는 조치로 구분됩니다. 당사는 공통적용에 한하여 경과조치가 적용되고 있으며, 선택적용 경과조치는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분		경과조치의 종류		적용여부
공통적용	가용자본	제도시행前 기발행자본증권가용자본 인정범위 확대(TFI)		○
	업무보고서	보고 및 공시기한 연장		○
선택적용	가용자본	시가평가로 인한 자본감소분 점진적 인식(TAC)		X
	요구자본	신규도입 위험	신규 보험위험 전진적 인식(TIR)	X
		기존측정 위험	주식위험액 증가분 점진적 인식(TER)	X
			금리위험액 증가분 점진적 인식(TIRR)	X
K-ICS비율	적기시정조치 적용 유예		X	

[경과조치 적용 전 지급여력비율 세부]

(단위: 억원, %)

구 분	당분기 (23.3Q)	당분기-1분기 (23.2Q)	당분기-2분기 (23.1Q)
가. 지급여력금액 (기본자본 + 보완자본)	192,608	190,469	178,661
기본자본 ^{주2)}	93,576	91,945	84,879
보완자본	99,032	98,525	93,783
I.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상의 순자산 (1+2+3+4+5+6)	187,214	184,979	171,858
1. 보통주	354	354	354
2. 자본항목 중 보통주 이외의 자본증권	398	398	697
3. 이익잉여금	100,213	102,094	94,900
4. 자본조정	-1,526	-1,526	-1,525
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675	-6	-749
6. 조정준비금	86,099	83,665	78,181
II. 지급여력금액으로 불인정하는 항목 (지급이 예정된 주주배당액 등)	803	679	714
III. 보완자본으로 재분류하는 항목 (기본자본 자본증권의 인정한도를 초과한 금액 등)	92,835	92,355	86,265
나. 지급여력기준금액 (I - II + III)	89,780	86,921	84,878
I. 기본요구자본	118,570	114,748	110,691
- 분산효과 : (1+2+3+4+5) - I	42,990	42,601	41,693
1. 생명장기손해보험 위험액	89,754	85,280	80,545
2. 일반손해보험위험액	13,452	13,001	11,642
3. 시장위험액	28,595	29,661	30,086
4. 신용위험액	23,653	23,389	24,213
5. 운영위험액	6,106	6,018	5,898
II. 법인세조정액	29,508	28,552	26,490
III. 기타 요구자본(1+2+3)	718	725	677
1. 업권별 자본규제를 활용한 종속회사의 요구자본 환산치	303	313	327
2. 비례성원칙을 적용한 종속회사의 요구자본 대응치	78	75	0
3. 업권별 자본규제를 활용한 관계회사의 요구자본 환산치	337	337	350
다. 지급여력비율 : 가 ÷ 나 × 100	214.5	219.1	210.5

[지급여력비율의 경과조치 적용에 관한 사항]

(1) 공통적용 경과조치 관련

(단위 : 백만원, %)

구분	경과조치 적용 전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 (%)	214.5	214.5
지급여력금액	19,260,751	19,260,751
기본자본	9,357,595	9,397,434
보완자본	9,903,157	9,863,317
보완자본 한도 적용 전	863,396	203,869
보완자본 한도	4,489,014	4,489,014
해약환급금 부족분 상당액 중 해약환급금 상당액 초과분	9,039,761	9,039,761
(기발행 신증자본증권)	39,839	
(기발행 후순위채무)	619,687	
지급여력기준금액	8,978,027	8,978,027

(2) 선택적용 경과조치 관련

① 자본감소분 경과조치

(단위: 백만원, %)

구분	경과조치 적용 전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 (%)	214.5	-
지급여력금액	19,260,751	-
기본자본	9,357,595	-
보완자본	9,903,157	-
자본감소분 경과조치 적용금액	0	-
지급여력기준금액	8,978,027	-

* 당사는 자본감소분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아 경과조치 전·후 금액 및 비율이 동일함

② 장수위험·사업비위험·해지위험 및 대재해위험 경과조치

(단위: 백만원, %)

구분	경과조치 적용 전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 (%)	214.5	-
지급여력금액	19,260,751	-
기본자본	9,357,595	-
보완자본	9,903,157	-
지급여력기준금액	8,978,027	-
기본요구자본	11,857,002	-
생명·장기손해보험 위험액	8,975,396	-
사망위험	435,524	-
장수위험	30,791	-
장해·질병위험	4,928,834	-
장기재물·기타위험	200,246	-
해지위험	6,579,952	-
사업비위험	814,687	-
대재해위험	176,832	-
일반손해보험 위험액	1,345,204	-
보험가격 및 준비금 위험	1,210,621	-
대재해 위험	357,322	-
시장위험액	2,859,500	-
신용위험액	2,365,273	-
운영위험액	610,592	-
법인세조정액	2,950,761	-
기타요구자본	71,787	-

* 당사는 장수위험·사업비위험·해지위험 및 대재해위험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아 경과조치 전·후 금액 및 비율이 동일함

③ 주식위험 경과조치 또는 금리위험 경과조치

(단위: 백만원, %)

구분	경과조치 적용 전	경과조치 적용 후
지급여력비율 (%)	214.5	-
지급여력금액	19,260,751	-
기본자본	9,357,595	-
보완자본	9,903,157	-
지급여력기준금액	8,978,027	-
기본요구자본	11,857,002	-
생명·장기손해보험 위험액	8,975,396	-
일반손해보험 위험액	1,345,204	-
시장위험액	2,859,500	-
금리위험	759,647	-
주식위험	2,308,709	-
부동산위험	550,289	-
외환위험	804,604	-
자산집중위험	0	-
신용위험액	2,365,273	-
운영위험액	610,592	-
법인세조정액	2,950,761	-
기타요구자본	71,787	-

* 당사는 주식위험(또는 금리위험)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아 경과조치 전·후 금액 및 비율이 동일함

4-2-3. 최근 3개 사업연도 주요 변동 요인

(단위 : 억원, %)

구 분		당기 (23.3Q)	직전년도 결산 (22.4Q)	전전년도 결산 (21.4Q)
경 과 조 치 전	지급여력비율	214.5	-	-
	지급여력금액	192,608	-	-
	지급여력기준금액	89,780	-	-
경 과 조 치 후	지급여력비율	214.5	-	-
	지급여력금액	192,608	-	-
	지급여력기준금액	89,780	-	-

* 지급여력비율은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 수치만 산출 가능함 (전 생·손보사 공통사항)

* 당사는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아 경과조치 전·후 금액 및 비율이 동일함

VI. 위험관리

6-1. 비례성원칙 적용에 관한 사항

1) 개요

비례성원칙이란, 노출된 리스크의 본질, 규모 및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요구자본의 측정방법을 단순화한 방법(이하 '간편법')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정한 원칙입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 "IV.1-6. 비례성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lity)"에 근거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적용현황

- ① 적용항목 : 기타 종속회사에 대한 요구자본 산출 시 간편법 적용
- ② 적용절차 : FY'23 제57기 제3차 위험관리위원회 승인 후,
금융감독원장에게 비례성원칙 충족여부 입증결과를 보고 및 제출
- ③ 적용기간 : 최초 적용일로부터 최대 3년
- ④ 적용방법 : 해당 종속회사 재무상태표 상 총자산의 8%를 요구자본 대응치로 적용
- ⑤ 적용대상 및 결과

(기준 : '23.9월말, 단위: 억원)

구분	종속회사명	소재지	최초 적용일	비중요성 기준		총자산	요구자본 (총자산의 8%)
				규모 ^{주1)}	리스크 ^{주2)}		
1	DB자동차보험손해사정(주)	한국	'23.6월말	충족	충족	184	15
2	DB CAS손해사정(주)	한국				207	17
3	DB CSI손해사정(주)	한국				153	12
4	DB CNS자동차손해사정(주)	한국				108	9
5	DB MnS(주)	한국				226	18
6	DB ADVISORY AMERICA, LTD.	미국				15	1
7	John Mullen & Company, Inc.	미국				86	7

주1) 규모기준 : 해당 종속회사의 총자산이 그룹기준 총자산의 1% 미만 여부

주2) 리스크기준 : 해당 종속회사의 파생상품거래 규모가 해당 종속회사 총자산의 6% 미만 여부
(장외파생상품거래는 3% 미만 여부)

3) 관리방법

간편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비례성원칙 충족 여부를 입증한 후, 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였습니다. 간편법은 최대 3년 동안 사용 가능하고, 3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비례성원칙 충족여부를 다시 입증할 계획입니다. 간편법 적용현황, 적용결과 및 모니터링 내역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리스크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간편법 적용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